

제 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82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부칙에 있는 전통시장의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조정(안 제6조)

-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의 도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10. 6. ~ 10. 2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설안내 표지판, 구두수선대 등을 삭제하여 정비함.
- 안 제6조의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는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재래시장 등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등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구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

- 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전 조항)

(별표 4) -개정 전

점용료 조정산식 (제69조제3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3] <개정 2015.12.22.>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 물	전기관, 전기통신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1년	2,40	1,60	400
						0	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	3,15	850
						0	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	4,85	1,25
						0	0	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	6,40	1,65
						0	0	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				8,05	2,05	
		00				0	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				12,1	3,10	
		00				00	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				20,1	5,20	
		50				50	0	
	지름 3.0m 초과	42,2				28,2	7,25	
	50	00	0					
지중정착장 치(어스앵 커), 압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	1,15	300	
					0	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	2,40	600	
					0	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	4,85	1,25	
					0	0	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	7,25	1,85	
					50	0	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	9,65	2,50					
	00	0	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	12,1	3,10					
	00	00	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	18,1	4,60					
	00	00	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	30,1	7,75					
	00	50	0					

		지름 3.0m 초과			63,2 50	42,2 50	10,8 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